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

<p>1. 통보국가: <u>유럽연합</u>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</p>
<p>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-TBT 질의처, 팩스: +(32) 2 299 80 43, 이메일: grow-eu-tbt@ec.europa.eu 웹사이트: https://technical-barriers-trade.ec.europa.eu/en/home</p>
<p>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</p>
<p>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울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휴대용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</p>
<p>5. 제목(페이지 수, 언어, 열람방법): 휴대용 배터리의 분리 가능성 및 교체 가능성에 대한 예외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(EU) 2023/1542를 보완하는 위원회 대표 규정 초안; (5페이지, 영어)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EEC/26_02497_00_e.pd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TBT 질의처 팩스: + (32) 2 299 80 43 이메일: grow-eu-tbt@ec.europa.eu 해당 텍스트는 웹사이트(https://technical-barriers-trade.ec.europa.eu/en/home)에서 확인할 수 있다.</p>
<p>6. 내용: 이 위원회 대표 규정 초안은 배터리 규정 제11조(2)항의 기존 목록에 새로운 제품 범주를 추가하는 것으로, 이 범주에서는 휴대용 배터리가 독립 운영자에 의해서만 분리 및 교체 가능하게 만들어지면 된다.</p>
<p>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휴대용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의 조기 진부화 방지, 수명 종료 시 폐배터리의 분리 및 별도 폐기 촉진, 최종 사용자 및 제품의 안전;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; 환경 보호</p>
<p>8. 관련 문서: 기술평가 보고서는 다음에서 조회할 수 있다 : https://environment.ec.europa.eu/document/21b9a660-a240-4f97-a755-847d6f74df0e_en</p>
<p>9. 채택 예정일: 2026-07 시행 예정일: 유럽연합 관보 발행일로부터 20일(채택 후 약 3개월 후)</p>

10. 의견 제출:

의견 마감일: 2026-07-11

[X] 통보일로부터 60일

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,

EU-TBT 질의처,

팩스: + (32) 2 299 80 43,

이메일: grow-eu-tbt@ec.europa.eu